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1호

2026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
2026년 7월 22일

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 분야	임용직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근무처 및 근무시간	담당 직무 내용
정 책 지원관	지방행정 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2년	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(주 40시간)	▸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▸ 의원의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▸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▸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▸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

※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 근거법령

▢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▢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▢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
▢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 응시자격 요건 ※ 기준일 : 최종시험(면접) 시행예정일

▢ 공통 응시자격 요건

○ 응시 연령 : 18세 이상 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○ 지역 및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【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 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】

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· 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】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 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 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 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 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▢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○ **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**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)

임용분야	응 시 자 격 요 건
정책지원관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출자·출연기관**, 대학교(부설연구기관 포함) 법인에서 지방행정, 법무(입법지원, 법률해석, 법제연구 등), 재정분석, 감사, 정책개발, 정책분석 관련 실무경력 *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cleaneye.go.kr) 기준 **2026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기준 (행정안전부)

※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을 인정하며, 사무보조·행정지원·단순 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※ 경력요건의 기간 산정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불가

※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하고

다른 업무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경험은 인정하지 않음

※ 학위취득은 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)상에 기재된 졸업일자(학위수여일자)를 기준으로 함

4 보수수준

▢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책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을 고려하여 결정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비 고
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70,782천원	50,272천원	주 40시간 (주 5일 근무)

※ 연봉 외 급여(각종 수당)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희망 시 고용보험 (실업급여) 가입 가능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 시험일정

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(예정)	면접시험 (예정)	최종합격자발표	임용예정일
2026.8.3. ~ 8.5.	2026.8.11.	2026.8.13.	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	

※ 면접시험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서류전형결과 발표 시 확정 공고 (시험일정은 응시인원, 서류검증 소요기간, 재공고 등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)

※ 공고 및 발표는 북구의회홈페이지 (https://www.bukgucouncil.daegu.kr) 공지사항에 게시

6 시험방법

▢ 1차 서류전형

○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○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)

○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하며, 이 경우 기존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

▢ **2차 면접시험**

○ 면접시험 평가요소 : 5개 항목(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)

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
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

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○ 불합격 기준
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

○ 합격자 결정

-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 면접위원이 상·중·하로 평가 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
- 동점자의 경우 ②→①→③의 순으로 평정점이 높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

○ **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**

▢ **최종합격자 발표 : 추후 별도 공고**

○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(의회소식 / 공지사항)에 공고
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○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▢ 원서교부 :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활용

▢ 접수기간 : **2026. 8 3.(월) ~ 2026. 8. 5.(수)**

▢ 응시수수료 : 7,000원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료 면제 (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 제출)

▢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○ 인터넷 접수 불가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
○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날인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(등기우편접수의 경우 통상환증서 미동봉 시 무효 처리)

< 방문 접수 >

❑ 접수장소: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(**북구청 5층, 053-665-4032**)

❑ 접수시간: 09:00~18:00 /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▸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

❑ 응시수수료: 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(7,000원) 인증기 날인

❑ 대리접수 시 위임장(붙임2)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
< 등기우편 접수 >

❑ 주 소: (우)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(침산동), 북구의회사무국 인사담당자

❑ 원서접수 마감일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

❑ 임용분야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**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**

▸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 불가

❑ 우편봉투 외부에 **'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'** 문구 표기

❑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,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본인신분증 확인 후 응시표 배부 (신분증 반드시 지참)

❑ 우편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**의회사무국(053-665-4032)에 전화 확인 요망**

8 제출서류

▷ 증빙서류는 **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**의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

▷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

▷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, 띠지 사용 금지

▢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점검표 (별지1호 서식) 1부
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은 3p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하나만 기재

▢ 응시원서 (별지2호 서식) 1부

▢ 이력서 (별지3호 서식) 1부

○ **경력증명서로 증빙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**

○ 전임(상근직) 외의 근무경력은 "주근무시간/ 주40시간"의 비율로 근무경력을 산정하여 이력서 기재

▢ 자기소개서 (별지4호 서식) 1부

▢ 직무수행계획서 (별지5호 서식) 1부

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(별지6호 서식) 1부

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(별지7호 서식) 1부

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별지8호 서식) 1부
또는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 1부

▢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
▢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
○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, 대학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
○ 해외 학위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

▢ 경력(재직)증명서

○ 근무기간, 주당 근무시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

○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사실확인 증명서 (별지9호 서식)를 추가 제출

○ 발행기관의 직인, 발행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
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
○ 제출한 경력증명서 내용이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을 판단하기에 미비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(폐업으로 인한 미제출 포함)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시 직무분야 경력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확인받아서 제출하기 바람

▢ 기타 증빙서류 (해당자에 한함)

○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사본 (원본지참)

○ (예시)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, 업무관련 자격증, 상훈(표창) 등

9 기타 유의사항

▢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람

▢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원서접수 기간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

▢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.
단, 원본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

▢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음

▢ **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**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▢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**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**

▢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또는 개별 유선통보 함

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(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) 및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,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등 정치운동은 금지됨

▢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됨

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의회 의정팀 인사담당자(☎ 053-665-403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직 무 기 술 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 북구의회	의회사무국

주요 업무	○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관련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○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○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 및 관련 자료 작성 등 지원 ○ 의원연구단체 지원 ○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
필요 역량	○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성실성 ○ 상황인식/판단력, 분석력,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업무조정능력 ○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비판능력을 통한 견제능력 ○ 행정사무감사(조사) 보좌능력 및 의사진행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력
필요 지식	○ 지방의회와 의사진행(회의규칙 등),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지식 ○ 예·결산안과 정책수립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위한 지식 ○ 북구 조직과 기구에 따른 업무분장 등 구정운영에 대한 지식
응시자격요건	**○ 아래 3가지 응시자격요건 중 1가지 해당**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(상당)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*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**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교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출자·출연기관, 법인에서 지방행정, 법무(입법지원, 법률해석, 법제연구 등) 재정분석, 감사, 정책개발, 정책분석 관련 실무경력

[붙임 2]

위 임 장

1. 위임자

성 명		전화번호	
주민등록번호			
주 소			

2. 대리인

성 명		전화번호	
주민등록번호			
주 소			

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202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응시원서 및 서류의 제출을 위임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위임자 (서명)

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